

### Ⅲ. 국내 지주회사제도 관련규제

#### 1. 규제 정책

##### 가. 필요성

지주회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배자본 절약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지주회사를 통해 다수의 기업을 동일한 경영지배체제하에 통합시키므로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지주회사가 지배력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반면, 지주회사제도는 현행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구조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체계로 전환되어 대기업집단의 지분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질 수 있는 장점도 갖게 된다. 그러나 소수주주나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변칙적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는 있는 바, 이를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규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주회사 규제의 핵심은 기업의 소유권(cash flow right)과 지배권(control right)간의 지나친 괴리를 방지하는 것이다.<sup>1)</sup>

소유권이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과 동일한 개념이며, 지배권이란 투자자 접근방식(investor approach)에 의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힘(the power to appoint directors)'으로 정의된다. 소유와 지배간의 괴리는 피할 수 없고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부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다.<sup>2)</sup>

---

1) '소유와 지배의 괴리'란 Berle과 Means(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1932)가 제기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영어로는 동일한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을 번역한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크게 대리인비용발생, 기업내부감시장치 작동제한, 기업외부감시장치 작동제한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up>3)</sup>

첫째,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의 발생이다. 대리인비용이란 기업경영자가 주주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데 따른 비용을 말하는데 소유지배의 괴리가 커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현금지분)으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한 전문경영이 보편화된 주식회사의 경우 경영자(대리인)가 소유자(주주)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sup>4)</sup> 기업경영의 권한을 위임한 소유자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시비용이 발생하므로 적지 않은 대리인 비용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대리인 비용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기업지배구조<sup>5)</sup> 규제의 작동을 저해하여 기업내부 감시장치 작동을 제한하게 된다. 기업지배구조의 실제 작동은 주주의 의결권(재산권)에 기초하므로 소유와 지배 괴리에 의해 의결권의 귀속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업 내부감시장치의 작동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사외이사 제도를 채택하였다도 동 사외이사를 실제로는 지배주주가 선임한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수년간 사외이사 확대, 소수주주권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집단 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시장경제법제하에서 모든 경제활동

2) 우리나라 민간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 즉 실제 지배주주의 출자지분과 의결권간의 괴리도를 보면 의결권 승수(의결권-실제출자지분)가 3.2배(자산2조원 이상 36개 민간기업집단)~6.1배(자산 5조원 이상 11개 민간기업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2003), p.5.

3) 김학현(2005), pp.10-12. 참조

4) 예를 들면 회사의 이익 또는 이익실현 기회를 자기거래를 통해 침탈, 이익배당을 기피하고 동 재원을 방만하게 운영, 효율적인 사업이라도 고위험수익이면 지위유지를 위해 사업진출 포기, 과도하게 높은 봉급이나 fringe benefit 등이다.

5) 기업지배구조란 주주 등 기업의 이해 관계자가 자기의 이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기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경영진을 규율하는 내부규율구조를 말한다.

은 재산권(의결권)에 기초하므로 재산권 자체의 왜곡에 따른 문제를 왜곡 자체의 시정 없이 간접적으로 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형상 아무리 좋은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더라도 이러한 내부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대리인 비용을 낮출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자본시장의 감시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는 차등 의결권주식(dual class equity, 국내 미도입)<sup>6)</sup>, 주식 피라미딩<sup>7)</sup> 또는 계열사간 출자<sup>8)</sup> 등에 의해 피리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한다. 실제출자 지분에 비해 의결권이 높을 경우 경영실패시에도 경영권 도전위협이 차단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의 감시기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미쓰이, 미쓰비시 등 일본의 기업집단은 2차대전 후 그룹소속 회사간 상호출자 방식으로 재형성되었는데 이러한 상호출자가 일본 대기업을 적대적 M&A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9)</sup>

#### 나. 규제원칙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 대한 경쟁 및 경제규제정책의 기본 틀은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을 통하여 대기업집단과 금융기관들에 대한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하여 왔으며, 동 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도 금지시킴으로써 대기업집단이 고유사업 없이 자회사

6) 1주 1의결권 원칙에 예외인 주식

7) 최고 상위에 있는 회사가 하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의결권)의 일부만을 소유하는 형태를 여러 단계 거치는 경우에 발생한다.

8) 동일 기업집단내에 있는 계열회사간 직접, 간접상호출자(reciprocal shareholding)나 교차출자(cross shareholding) 등 피라미딩을 벗어나는 출자가 있는 경우 주식 피라미딩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9) 적대적 M&A가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 김학현(2005), p.12.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관련법들은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가 일반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등 여전히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sup>10)</sup>

특히 대기업집단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 은행소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동일인의 은행주식소유를 제한하고 있다.<sup>11)</sup>

경제운영원리로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범위 및 정의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아직도 금융자본의 범위를 협의로 보는 경우 은행업에만 축소 적용되지만 광의로 볼 경우 비은행금융업을 통칭하여 금융, 보험업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은행업을 지칭하여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가 중요한 경제운영원리로 지칭되지만, 또한 명시적으로 광의의 금융업을 정의하고 광의의 금융업과 비금융업간의 분리를 거론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GLB Act에서는 '지배적으로 금융적인 활동'(predominantly financial activity)을 거론하고 이 활동과 다른 활동간의 구분을 규제하기도 한다.<sup>12)</sup> 우리나라 역시 금융자본이라는 용어가 은행업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sup>13)</sup> 금융자본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산업 및 실무적용에 있어 지속적인 논쟁이 진행 중이다.<sup>14)</sup>

그러나 국내 정책당국은 세계경제가 신자유주의 사조 하에 규모 및

10)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11) 은행법 제15조,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및 제8조의 2

12) 12 USC § 1843(n) 참조

13) 예를 들면 소유규제와 관련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규제되지만 제2금융권 금융기관(보험, 증권 등)에 대한 소유는 허용된다.

14) 공정거래법8조의2에 규정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규제는 은행업에만 축소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보험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9년 2월에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집단들의 지주회사로의 전환 및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금융 분야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일환으로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2003년 12월 확정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중에는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정책방안으로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유도'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 비용을 축소키로 한 바 있다.<sup>15)</sup>

그러나 여전히 지주회사와 관련한 많은 주식소유 제한규정으로 사실상 세계경제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sup>16)</sup>

#### 다. 규제근거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규율하는 핵심법규는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다.

공정거래법은 신고조항(제8조), 행위제한 규정(제8조의2), 벌칙조항(제66조, 제68조)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지주회사를 일반적으로 규율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한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간접적인 규제<sup>17)</sup>만 하고 일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직간접적인 모든 규제<sup>18)</sup>를 가하고 있으나 금융

15)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2003.12), p.12.

16) 전삼현(2003), p.147.

17) 간접 규제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금지, 계열사 채무보증제한 등이다.

18) 직접 규제는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대상규제, 설립규제 및 행위규제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특별법을 통하여 비교적 규제 완화하는 정책을 채택하였으나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규제가 차별적으로 완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19)</sup>

상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파산에 대하여 채무리스크를 단지 출자 자본의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331조), 사실상 채무지급보증 등의 방법을 통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리스크를 상당히 부담한다. 또한 지주회사의 설립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상법상 주식 교환 및 주식이전, 분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주식의 공개매수 등은 증권거래법상 규정에 따른다.

## 2. 규제별 주요내용

### 가. 정의 및 업무(대상규제)

#### 1) 지주회사의 정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란 (자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보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sup>20)</sup>

'지배'란 주식을 소유하여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업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의결권(공익권)을 행사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sup>21)</sup>'주된 사업'의 기준은 보유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전체 자산 가운데에서 50% 이상이 되는

---

가 있다.

19)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등(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5호, 제7항 제2호) 공정거래법 자체에서 이른바 간접적인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20)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2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21) 전삼현(2003), p.152.

것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직접적인 규제를 받도록 한 것은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적은 중소기업의 지주회사까지 규제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자회사’란 지주회사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의미한다.<sup>22)</sup> 즉, 지주회사의 계열회사<sup>23)</sup> 이면서, 지주회사가 단독 또는 그 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와 합하여 소유하는株式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株式과 같거나 많은 기업을 의미한다.<sup>24)</sup>

공정거래법과 유사하게 금융지주회사법에서도 금융지주회사란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지배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지배’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sup>25)</sup>와 합하여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sup>26)</sup>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자회사 등과 합하여 소유하는株式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株式보다 적은 경우는 ‘지배’로 보지 않음으로 특수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최다출자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된 사업’의 의미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株式(지분 포함)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것을 말하며, <sup>27)</sup> 이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표시가액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의해 금감

22)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3항

23) 계열회사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당해 2 이상의 회사를 말한다. 법 제2조제3호

24)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호

25) 특수관계자란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및 동일인 관련자(동일인 관리자로부터 분리된 자 제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제2호.

2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위의 인가를 획득해야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금융지주회사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sup>28)</sup>

<표 III-1>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정의 비교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지주회사와 동일계열에 속하고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인 중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지배하고, 보유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이 되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회사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인가를 받은 회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약간의 정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기만 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도 해당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산총액이 1천억원에 미달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더라도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않으면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어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된다.

지주회사의 정의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은 총자산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비중이 50% 이상 규정이 있으나 미국과 영국 기

28)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타 유럽 국가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요 국가별 지주회사 정의를 비교하면 <표Ⅲ-2>와 같다.

<표 Ⅲ-2> 주요국의 지주회사 정의 비교

국가	내용
한국	- 지주회사 : 총자산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공정거래법) - 금융지주회사 : ① 총자산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비중이 50% 이상, ② 인가받은 회사(금융지주회사법)
미국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정의 없음 - '총자산중 자회사 주식가액 비중'기준 없음. -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로만 정의
일본	- 지주회사 : 총자산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독금법) - 은행(보험)지주회사 : ① 총자산 중 보유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비중이 50% 이상, ② 은행(보험회사) 발행주식의 과반수 보유, ③ 인가받은 회사 (해당 사업법)
영국	- 공정거래법, 금융법상 지주회사 정의 없음. - 지주회사 : 타 회사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거나 타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회사법) - '총자산중 자회사 주식가액 비중'기준 없음

##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 범위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사업내용에 대한 지배는 지주회사의 본질적 개념요소를 이루는 것인데, 여기서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은 단순히 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나 지주회사와 자회사 임원 사이의 사실상의 관계 등을 통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전반에 중요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이를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적어도 자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시하고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sup>29)</sup> 지주회사가 자신에 속하는 자회사의 사업전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관여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면, 사실상 지주회사는 그 존재의 사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30)</sup>

<표 III-3>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가능업무	세부내용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li> <li>-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li> <li>-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li> <li>-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li> <li>- 상기 사항에 부수하는 업무</li> </ul>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li> <li>-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li> <li>- 자회사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등을 위한 사무지원</li> <li>-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li> </ul>

주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국내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는 지배업무로 한정하여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만을 영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sup>31)</sup>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의 대상업무를 보면 <표 III-3>과 같다.

주요국의 금융지주회사 업무규제를 보면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별로 상이하다. 즉, 금융지주회사는 모든 종류의 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반면,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업 및 자회사 경영관리 업무만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무규제가 없어 업무범위

29) 김현태·김학훈(2006), p.22.

30) 김문제(1998), pp.417-418 ; 황승화(2004), p.121.

31)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업을 본체 혹은 자회사를 통해 영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으나 주주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타 업무 수행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은행 또는 보험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회사 업무 범위가 동일하나 미국,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무 규제가 법상으로 규율되어 있지 않다.

자회사의 업종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과 금융 유관업종만 자회사로 둘 수 있고, 비금융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2)</sup>

주요국의 자회사 업종관련 규제를 보면 일본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법상 열거된 금융업종만을 자회사로 둘 수 있으나 보험지주회사는 인가를 받으면 법에 열거되지 않은 비금융업종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업종을 자회사로 둘 수 없으나 보험지주회사는 승인을 받을 경우 비보험업종 자회사가 가능하다. 영국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 업종에 대해 특별한 규정 없다.

주요국의 지주회사별 자회사 업무 및 가능 업종을 비교하면 <표 III-4>와 같다.

---

32)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기업경영의 진척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였으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6.4.24).

<표 III-4> 주요국의 지주회사별 자회사 업무 및 업종 비교

국가	내용
한국	- 지주회사업무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자회사 업종 금융업과 금융 유관업종. 비금융업 회사 금지
미국	- 업무 금융지주 : 모든 종류의 금융업무 영위 가능 은행지주 : 은행업 및 자회사 경영관리 업무만 영위 가능 보험지주 : 특별한 업무 규제 없음 - 업종 금융·은행지주 : 비금융업 자회사 금지 보험지주 : 승인을 받을 경우 비보험업종 자회사 가능
일본	- 업무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업종범위 은행지주 : 법에 열거된 금융업종만을 자회사로 둠 보험지주 : 인가후 비금융업종 자회사 가능
영국	- 지주회사업무 및 자회사 업종 특별한 규정 없음

나. 설립규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가요건<sup>33)</sup>을 갖춰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요건은 주식회사(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로서

- i) 사업계획의 타당·건전,
- ii) 주요출자자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33)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 iii)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 건전,
  - iv)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해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sup>34)</sup>
- 주요국의 인가요건을 비교하면 <표Ⅲ-5>와 같다.

<표 Ⅲ-5> 주요국의 금융지주회사 인가요건 비교

	인가요건
한국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 및 경영상태, 사회적 신용도 등
미국	자본요건, 경영상태요건, 지역재투자법 요건
일본	자본충실도, 경영능력, 금융지주회사의 수지전망등
영국	특별한 인가조건 없음. 시장지배력 강한 기업결합금지

금감위는 인가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및 채무보증 해소사항,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 등에 대해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필요하다.<sup>35)</sup> 또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자산 1천억원 이상일 경우 금감위 인가와는 별도로 공정위 신고가 필요하다.<sup>36)</sup>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지주회사로의 전환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sup>37)</sup>

해소대상 채무보증으로는 i)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ii)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간, iii) 자회사 상호간, iv) 자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간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제하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현행 지배구조하에서 일반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특별법을 통하여 특례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채무보증과 관련한 설립규제는

34)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

35)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

36) 공정거래법 제8조

37) 공정거래법 제8조의3

없어 현행 구조하에서도 지주회사를 설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주요국의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비교하면 <표 III-6>

<표 III-6> 주요국의 지주회사 설립요건·행위규제 비교

	한 국	미 국	일 본	EU
부채 비율	200% 이하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자회사 지분율	상장법인 30%, 비상장 50% 이상	제한 없음	50% 이상 자회사간주	제한 없음
채무보증 해소	설립시 기존의 채무보증 해소필요 단, 금융지주 예외인정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금융·비금융 동시보유	불가능	은행지주만 규제	불가능	제한 없음
손자회사 설립	원칙적 금지 단 지회사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있는 손자회사 허용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연결납세 제도	미적용	도입	도입	도입

자료 : 황승화(2003), p.129. 참조 제작성.

#### 다. 행위규제<sup>38)</sup>

##### 1)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의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순자산액(자산총액-부채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sup>39)</sup> 동 규제의 목적은 지주회사가 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과도한 계열기업의 확장을 초래할

38)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규제(법 제8조의2)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금융지주회사법상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내용도 함께 설명한다.

39)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가능성을 방지키 위함이다.<sup>40)</sup>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관련해서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제한하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설립시 부채비율 제한 조항으로 인해 계열사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주식 취득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동 비율의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였다.<sup>41)</sup>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지주회사의 부채비율도 현행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 2)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제한

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30%, 벤처기업 20%) 미만 소유하는 것을 제한한다.<sup>42)</sup> 자회사 지분율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지배회사의 지배가능 범위가 확대되어 경제력 집중 및 자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005년 8월말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상장자회사 39.9%, 비상장자회사 80.0%이며,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상장자회사 54.5%, 비상장자회사 91.7%이다.<sup>43)</sup> 선진국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지주회사가 그 지분을 100% 보유하는 완전자회사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법으로 요구하는 자회사 지분 보유 한도가 30%에 불과하여 지주회사제도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장과 이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정의에서 그 기준을 최다출자자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하여 지배대상 회사 지분의 보유를 강제하는 것은 해외 법제상에는

40) 황승화(2004), p.127.

41) 대한상공회의소, 「지주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003.4.

42)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4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5.9.30)

나타나지 않는 규제로서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표 III-6> 참조).

### 3) 자회사외 타 회사에 대한 지배목적의 주식소유행위 금지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 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sup>44)</sup>

지배목적이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sup>45)</sup> 이는 지주회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계열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 미만까지는 지분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5%가 넘는 부분에 대한 지분투자나 합작투자는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제한(shadow voting 의무화)하고 있다.<sup>46)</sup>

### 4)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구분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또한 금융지주회사도 일반회사를 자회사화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sup>47)</sup> 다만 금융지주회사 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주식에 대하여는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로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및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 확장 방지를 위해 동일한 순수지주

44)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45)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46)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47)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제5호



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시키고자 지주회사의 업종과 관계없이 획일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 현재 세계경제의 흐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5) 손자회사의 원칙적 금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sup>48)</sup>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도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규정한 회사 외에는 타 회사 지배를 금지한다.<sup>49)</sup>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sup>50)</sup>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도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sup>51)</sup> 단,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편입 당시 지배하고 있던 회사는 2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손자회사 주식취득 금지규정은 부채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회사를 통하여 지배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손자회사를 허용할 경우 손자회사를 통하여 지주회사에 출자하는 순환식 상호출자(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지주회사)를 통하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을 탈법적으로 충족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6)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과의 상호주식보유 원칙적 금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은 당해 금융지주회사내 다른 자회사 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sup>52)</sup>

즉,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거나, 금융지주회

48)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49)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제1항

50)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51)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제2항

5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사의 자회사 등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금지 조항<sup>53)</sup>에 의해서도 자회사나 손자회사는 각각 금융지주회사나 자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것과 같은 취지라 생각된다. 이 규제는 한 자회사의 부실이 타 자회사로 전염되어 전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상호주식보유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sup>54)</sup> 다만,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서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등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 이미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호주식보유를 인정하여 3년간 유예하고 있다.<sup>55)</sup>

#### 라. 자산운용 규제 등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초과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는 등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는다.<sup>56)</sup> 그러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 투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자기자본의 감소,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기타 금감위가 정하는 사유 해당 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sup>57)</sup>

금융지주회사등(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은 동일인, 동일차주(동일 계열),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sup>58)</sup>의 일정비율

53) 상법 제342조의2

54)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동 시행령 제27조제1항

55)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1 제1항

56)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

5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1조

58) 자기자본 순합계액 = 금융지주회사 자기자본 + 해당 자회사 자기자본 - (금

이내로 신용공여를 제한 한다(<표 III-7>참조).<sup>59)</sup> 자회사 중 은행, 종합 금융회사 및 증권회사만이 그룹차원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대상이 되며,<sup>60)</sup> 보험회사는 총자산기준으로 자산운용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민경제상 목적,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한도 초과를 인정하며, 추가적인 신용공여 없이 자기자본 변동, 지주회사 설립 미 편입 등의 사유로 한도 초과시는 유예기간을 1년간 부여한다.

<표 III-7>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신용공여대상	규제내용
동일차주	-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 범위내
동일인	-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0% 범위내
대주주	-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와 대주주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내

주 : 1) 규제대상 자회사에는 은행, 증권, 종금사만 포함

지주회사와 자회사 상호간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은 없으나 자회사 등의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지한다.<sup>61)</sup> 그러나 금융지주회사가 자신의 조달금리 미만으로 자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해당하게 된다.<sup>62)</sup>

또한 자회사 등(은행, 증권, 종금사만 해당)의 당해 금융지주회사내

금융지주회사 보유자회사 주식+자회사간 또는 자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 주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59)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60)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6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2) 공정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7호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한다.<sup>63)</sup> 자회사 등간 신용공여 시에는 담보를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또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는 불량자산의 거래가 금지된다.<sup>64)</sup>

<표 III-8> 자회사 등의 금융지주회사그룹 내부 신용공여 규제

신용공여대상	규제내용
금융지주회사	-금지(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타 자회사	-자기자본의 10% 이내(법제48조 제1항 제3호)
타자회사전체(합계)	-자기자본의 20% 이내(법제48조 제1항 제3호)

### 3. 지배 및 소유 관련 규제

#### 가. 현황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반면, 산업자본과 비은행금융회사간에는 결합이 허용되어 대기업집단은 많은 비은행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즉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투신, 여신전문업 등 거의 모든 금융업종에서 대기업집단이 지배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 4월말 현재 자산 6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 대상 대기업집단<sup>65)</sup>은 11개 인데 이들이 24개의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자산 2조원 이상인 55개의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집단<sup>66)</sup>이 68개의 금융

6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

64)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

65) 출자총액제한제(주식보유한도제)란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동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다른 국내회사 주식보유한도를 당해 회사 순자산(자기자본-계열사로부터의 출자분)의 25%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으로는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이며, 금융·보험사, 지주회사, 회사정리·화의·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등은 제외한다.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비은행금융회사 소유현황을 보면(<표 III-9>)와 같다.

<표 III-9> 대기업집단의 비은행금융회사 소유 현황  
(2005.5월말 현재)

(단위 :개)

	기업 집단수	금융 기관수	보험	증권·자산 운용·선물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기타
출자총액제한	11 (9)	24 (24)	6	6	4	8 (8)
상호출자제한	55 (25)	68 (67)	10	17	10	31 (30)

주 : ( )내는 공기업 및 비은행금융기관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집단 제외시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 및 소유에 관한 규제의 핵심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 이하 금산분리)원칙이다.<sup>67)</sup>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관해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의 속성<sup>68)</sup>에 더하여 재벌에 대한 규제<sup>69)</sup>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금지 규

66)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하며, 신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지정일 당시 상호출자는 지정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동 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회사 제외)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금지되며, 신규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정일 당시 채무보증을 2년 이내 모두 해소하여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67) 최근에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산분리와 관련한 연구의 쟁점과 주장은 VI장에서 설명한다.

68) 예를 들면 계열 금융기관과 다른 계열회사간의 부당내부거래 규제가 특별히 용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과 금융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유형, 무형의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반독점 규제가 별

제70) 등 일반적인 경제력 집중 규제 조항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의 주식소유 금지<sup>71)</sup> 및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의 주식소유 금지<sup>72)</sup>에 의해 금산 분리를 강제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의 수단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계열 금융기관이 취득한 동일 기업집단 계열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어 소유규제에 상응하는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다.<sup>73)</sup> 그러나 임원선임(해임), 정관변경, M&A 상황 등 세 가지 경우에는 해당 계열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2008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여 15%)의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분리 원칙을 다소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sup>74)</sup>

또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되는 것을 우려하여 국내 금융지주회사법은 대규모기업의 계열사인 금융기관(외국 금융기관 포함)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므로써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sup>75)</sup> 그러나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중간지주회사<sup>76)</sup>의 경우<sup>77)</sup>과 증권투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sup>78)</sup>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도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전성인, p.108. 참조

69)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의결권 제한 등.

70)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제5호 등.

71)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72)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

73)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74) 전성인, p.105.

75)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76) 우리나라는 중간지주회사를 가진 금융지주회사가 없으나 미국의 금융지주회사인 씨티그룹은 금융업종별로 3개의 중간지주회사를 두어 그룹을 운영한다. 양재호(2005), p.88.

77) 금융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야 하며,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은 동일한 업종이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78) 투자회사는 회사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간접투자기구임. 투자회

## 나. 비금융주력자제도

국내법에서는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지배를 방지하면서 순수 금융자본에 의한 은행지주회사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02년 4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비금융주력자<sup>79)</sup>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 15%) 소유한도로 규제하는 등 여전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을 고수하고 있다.<sup>80)</sup> 단,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지방은행지주회사는 예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포기,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10%까지만 보유가 가능하도록 규율되어 있다. 그러나 2년 내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sup>81)</sup>

---

사는 은행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유주식에 대해 그림자투표(shadow voting)만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못하며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자회사 등에 대한 궁극적 지배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본조의 취지와 배치되지 않는다. 양재호(2005), p.88.

79) 비금융주력자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또는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을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80)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81) 국내법 개정전에는 금융전업가인 경우 예외적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0%까지는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며, 당해 금융전업가가 대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 되었다면 계열분리 후 5년이 경과하여야 은행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전환할 수 있었다.

< 표 III-10 > 은행지주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규제

	기본한도	기본한도 초과보유 여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	10%(지방은행지주의 경우 15%)	금감위 승인시 10%, 25%, 33% 초과보유 가능
비금융주력자	4%(지방은행지주의 경우 15%)	금감위 승인시 10%까지 보유가능. 단 4% 초과분은 의결권 행사 금지

자료 : 한국은행, 『2002년 연차보고서』, p.107.

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소유 관련

국내에서 1980년대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한 이후 줄곧 은행의 소유한도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이고 둘째, 대기업에 의한 금융기관의 사금고화의 방지이다.<sup>82)</sup>

은행법상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은행주식의 동일인 보유한도를 10%, 지방은행의 경우 15%로 제한(은행법 제15조 제1항)하고 있으나,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지주회사가 은행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 적용 배제를 하고 있다.<sup>83)</sup>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는 원칙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며, 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 이내로 제한한다.<sup>84)</sup> 단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므로,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로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근 들어 보험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험회사의 은행업 겸업(어슈어뱅킹)허용 문제가 정책당국의 보험업 규제완화 방침 표명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의 은행업 겸업은 방카슈랑스와 마찬가지로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비자의 편리성

82) 전삼현(1999), p.272.  
 83)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  
 84)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1항



제공, 새로운 수익원 창출, 잠재 보험고객 확보 기회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진다. 현행 법제도하에서 보험회사도 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으면 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은행업 진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은행의 핵심업무를 내부 겸영시 이종업무 부문간, 행위 주체간의 이해상충 문제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관련된 부작용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따라서 차단벽 설치 및 감독이 보다 용이하면서도 겸업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업 진출을 검토할 수 있다.<sup>85)</sup>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의 소유구조를 통하여 은행을 지배하고자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식소유를 인정하되 경영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간접적으로 규제한다. 미국의 경우 어떤 임의의 회사도 FRB의 사전 승인 없이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sup>86)</sup>과 은행지주회사의 자격요건<sup>87)</sup>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며 5% 이상 25% 미만은 FRB의 심사대상이 되며 5% 미만은 규제 없이 소유가 가능하다.<sup>88)</sup> 미국에서는 산업자본이 지주회사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편익이 광범위한 규제로 인하여 높지 않기 때문에 산업자본과 금융이 분리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은행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현재에도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투자에 있어서도 자산건전성 차원의 규제만 남아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다. 즉 금융기관 대형화와 겸업화의 원류가 되고 있는 유럽의 유니버설 뱅킹시스템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에 입각해 있지 않다.

85) 이석호(2006)

86) BHCA Sec.3(a)

87) BHCA Sec.2(a)

88) 이진범, 김우진(2005), p.16.